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64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64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 17 선고 2000나15073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A외 1인)

【피고,피상고인】 CA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전BB)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 17. 선고 2000나15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설시의 각 간접사실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제25조의 3의 규정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가 중량구로부터

도급계약의 선급금을 수령한 이후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분과 관련된 선급금으로 약정한 금 72,97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판시 선급금이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시한 간접사실 중

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72,975,000원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중랑구로부터 선급금 110,550,000원을 수령함에 있어 선급금의 사용내역서와 사용계획서 및 선급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지급 약정기일이 도과한 시점에 체결된 점 및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제25조의 3의 규정 내용 등은 원고 회사가 선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가 여부의 사실인정과는 무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부분의 시공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선급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바 없이 공정 90%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갑제6호증의 1, 2, 을제8, 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최OO의 증언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기성고 청구과정 및 그 청구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선급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회사가 선급금을 수령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은 다음에서 보듯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증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조합이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이 인수하는 채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및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증금액 산정의 근거가 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2 제1항 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이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의 보증금액은 " $\{(\text{하도급공사금액} - \text{계약상의 선급금}) / \text{공사기간}\} \times 4$ "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급금을 보증금액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와 피고도 위 산식에 의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